

정책연구자료 98-09, p. 105, 1,000부

ISBN 89-8187-172-8 93330

행정간행물등록번호 A0045-65110-57-9832

國際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水準

洪 碩 杓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질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경제성장에 준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경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비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지출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연구자료에 따라 다르게 개념 규정하여 측정하고 있어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에 있어서 합의된 자료가 전무하다. 나아가서는 사회보장비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국제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산출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홍석표 책임연구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며, 자료수집에 이정화 연구원과 박인아 연구원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원종욱 부연구위원과 김미숙 책임연구원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敬培

目 次

| | |
|-----------------------------------|----|
| 要 約 | 9 |
| I. 序論 | 8 |
| II. ILO의 社會保障費 | 18 |
| 1. 社會保障費의 定義 | 18 |
| 2. ILO 社會保障費의 給與制度和 韓國의 制度 | 20 |
| III. OECD의 社會保障費 | 36 |
| 1. 社會保障費의 定義와 分類體系 | 36 |
| 2. 社會保障費 支出의 領域別 概念과 韓國의 制度 | 39 |
| IV. IMF의 社會保障費 | 53 |
| V. 韓國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 | 57 |
| 參考文獻 | 63 |
| 附 錄 | 65 |

表目次

| | |
|---|----|
| 〈表 II- 1〉 ILO 102號 協約의 社會保障給與 性格 (現金/現物給與 基準) | 22 |
| 〈表 II- 2〉 ILO 102號 協約의 社會保障給與 定期金 標準受給者 | 23 |
| 〈表 II- 3〉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醫療現物給與(1996) | 27 |
| 〈表 II- 4〉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失業給與(1996) | 29 |
| 〈表 II- 5〉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老齡給與(1996) | 30 |
| 〈表 II- 6〉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雇傭災害給與(1996) | 31 |
| 〈表 II- 7〉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給與(1996) | 32 |
| 〈表 II- 8〉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障礙給與(1996) | 33 |
| 〈表 II- 9〉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遺族給與(1996) | 34 |
| 〈表 II-10〉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其他給與(1996) | 35 |
| 〈表 III- 1〉 SOCX의 社會保障費 分類(1996年 基準) | 37 |
| 〈表 III- 2〉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老齡現金給與(1996) | 40 |
| 〈表 III- 3〉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障礙現金給與(1996) | 41 |
| 〈表 III- 4〉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1996) | 42 |
| 〈表 III- 5〉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老人과 障礙人서비스(1996) | 43 |

| | | |
|------------|--|----|
| 〈表 III- 6〉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遺族給與(1996) …… | 44 |
| 〈表 III- 7〉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現金給與(1996) …………… | 45 |
| 〈表 III- 8〉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 서비스(1996) …………… | 46 |
| 〈表 III- 9〉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積極的인 勞動市場 프로그램(1996) …………… | 48 |
| 〈表 III-10〉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失業給與(1996) …………… | 49 |
| 〈表 III-11〉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保健(1996) …… | 50 |
| 〈表 III-12〉 |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其他給與(1996) …………… | 52 |
| 〈表 IV- 1〉 | IMF 基準에 의한 中央政府支出의 機能別 分類 …… | 53 |
| 〈表 IV- 2〉 | IMF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財政 內容 …… | 54 |
| 〈表 IV- 3〉 |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 水準(1988~1996) …… | 55 |
| 〈表 IV- 4〉 |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의 內譯(1996) …… | 55 |
| 〈表 IV- 5〉 | 國家別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 比率 …… | 56 |
| 〈表 V- 1〉 |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6) …… | 57 |
| 〈表 V- 2〉 |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3) …… | 58 |
| 〈表 V- 3〉 | ILO 基準에 의한 國家別 社會保障費 比率 …… | 59 |
| 〈表 V- 4〉 | OECD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6) …… | 60 |
| 〈表 V- 5〉 | OECD 基準에 의한 國家別 社會保障費 比率(1993) …… | 60 |
| 〈表 V- 6〉 | 國家別 中央政府財政 對比 社會保障財政 比率(1996) …… | 61 |

要 約

1. 研究背景

- 지난 3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크게 증대 시켰음.
 - 그러나 이같은 경제성장과 증대된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는 매우 저급한 형편임.
 -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가 매우 저급한 수준이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통계는 자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로 인해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제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나 추이를 비교할 때 함의된 개념없이 서로 다른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통계를 구성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사회보장비 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음.

2. ILO의 社會保障費

□ 社會保障費의 定義

-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 ① 치료적이거나 예방적인 의료급여(medical care)를 제공하고, ② 부득이하게 소득의 전부 또는 소득의 대부분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유지시켜야 하며, ③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야 함.
 - 해당 사회보장제도가 법률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에는 구체화된 개인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구에 대하여 구체화된 의무가 규정되어야 함.
 - 해당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ILO 社會保障費의 給與制度和 韓國의 制度

- ILO의 給與制度
 - ①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②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③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④ 노령급여(old-age benefit), ⑤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⑥ 가족급여(family benefit), ⑦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⑧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⑨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등임.

－ 韓國의 給與制度

- 현재 ILO에 보고되어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보장비 지출 현황은 1993년의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분류에 비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비에 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보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ILO의 항목 구성의 기준(criteria)에 의거하여 1996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를 산출하였음.
 - 의료현물급여: 5조 5422억 9300만원
 - 실업급여: 5조 4634억 400만원
 - 노령급여: 4조 6197억 9700만원
 - 고용재해급여: 1조 3553억 3700만원
 - 가족급여: 2940억 8200만원
 - 장애급여: 4147억 4600만원
 - 유족급여: 6744억 8400만원
 - 기타급여: 4867억 6600만원

3. OECD의 社會保障費

□ 社會保障費의 定義

- － OECD에서는 “社會保障費(Social Expenditure)란 家口 또는 個人에게 公共 또는 民間部門(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지출에 한함)이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비용을 말함. 그리고 총비용에 있어서 特定 財貨 및 서비스의 直接的인 支給과 個人的인 契約이나 移轉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의함.

□ 社會保障費 支出의 領域

-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보장비 영역은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障礙現金給與(Disability Cash Benefits),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ccupational Injury & Disease), 傷病給與(Sickness Benefits), 老人과 障礙人 서비스(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遺族給與(Survivors), 家族現金給與(Family Cash Benefits), 家族 서비스(Family Services), 積極的 勞動市場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失業給與 (Unemployment), 保健(Health), 住宅給與(Housing Benefits), 其他給與(Other Contingencies) 등임.
- OECD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 노령연금급여: 4조 3897억 8700만원
 - 장애연금급여: 4075억 4600만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1조 123억 6300만원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1779억 9800만원
 - 유족급여: 6744억 8400만원
 - 가족연금급여: 110억 7700만원
 - 가족서비스: 3262억 7300만원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3359억 7400만원
 - 실업급여: 5조 4634억 400만원
 - 보건: 5조 4634억 700만원
 - 기타급여: 5611억 2400만원

4. IMF의 社會保障費

- IMF에서는 회원국이 통합재정수지 개념에 입각하여 작성한 정부예산·결산통계자료를 모아서 매년 「정부재정통계연감」(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을 발간함.
 - 국내적으로는 IMF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작성된 이 통계가 재정경제부의 「韓國統合財政收支」라는 책자로 매년 발간됨.
 - IMF 통합재정수지에서 정의하는 중앙정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하는데 중앙정부 지출예산은 14개항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됨.
 - 이 중 6번째 항목인 ‘사회보장·복지비(Social Security and Welfare)’가 사회보장재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간하는 「예산개요」의 예산내역으로부터 IMF 기준을 적용한 사회보장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됨.
 -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내역에서는 ‘사회개발’에 속한 ‘사회보장’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훈, 근로자복지, 기타 사회복지 등이 포함됨.
 - 특별회계에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및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사회보장 예산이 포함됨.
 - 기금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보훈기금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의 10종이 사회보장재정으로 분류됨.
- 198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

정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라 1990년대에 들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였음.

- 재정경제부가 결산통계를 토대로 IMF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재정의 10.6%를 사회보장·복지비에 지출하였음.
- 우리나라와 같이 19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체코, 헝가리, 멕시코는 사회보장비율이 각각 24.99%, 28.67%, 20.07%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

- 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우리나라의 경상 사회보장비(1996년) 지출은 18조 8,509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1996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4.83%에 해당됨.
 - 의료현물급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급여(29%), 노령급여(24.5%)순임.
 - 가장 최근에 ILO에 보고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각각 14.78%, 17.65%, 20.86%, 25.57%, 23.20%, 38.99%임.
-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우리나라의 경상 사회보장비(1996년) 지출은 20조 1,897억 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GDP의 5.18%임.
 - 보건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급여(27.1%), 노령현금급여(21.7%),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5.0%)순임.
 - OECD 기준에 의한 1993년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각각 15.64%, 12.44%, 22.84%, 28.27%, 28.73%, 38.03%임.

- IMF기준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재정의 10.6%를 사회보장·복지비에 지출하였음.
 - 회계종류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보장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이고, 특별회계에서는 5.5%, 기금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은 55.8%임.
 - 가장 최근에 IMF에 보고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중앙정부재정 대비 사회보장·복지비 비율은 각각 28.83%, 36.80%, 31.12%, 45.30%, 45.0%, 51.07%임.

I. 序論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크게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성장과 증대된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삶의 질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가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 및 중산층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보장비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수치조차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고 연구자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비교의 경우 어려움을 준다.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구성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사회보장비 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표준화된 추계 분류법을 기준으로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산출하는 국제기구로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공

동체 통계국(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y), 그리고 북유럽 사회통계위원회(NOSOSCO: Nordic Social-Statistical Committee)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사회보장비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II. ILO의 社會保障費

1. 社會保障費의 定義

ILO에서는 1949년이래 매 3년마다 동기구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1990~1993년 통계치까지 포함하여 모두 15번의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치가 발표되었다.

ILO는 수집된 통계자료를 3년마다 “사회보장의 비용(The Cost of Social Security)”이라는 제목으로 3개의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발표하고 있다. ILO가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주기로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 발표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150여 개국의 회원국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ILO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은 조사범주에 들어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운영의 포괄성과 상호연계성을 제시하고, 국제적으로 비교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배분과 재원에 따른 세입의 배분을 비교하는 것에 있다. 조사설문지는 모든 ILO회원국에게 보내지만, 조사 때마다 응답하는 회원국의 숫자는 달라진다. 1990~1993년 조사의 경우 103개국의 회원국이 자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고하였다. 국가경제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설문에 사회보장 세입과 지출항목의 GDP비율, 사회보장 급여지출과 전체인구, 그리고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첫째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 ① 치료적이거나 예방적인 의료현물급여 (Medical Care)를 제공하고, ② 부득이하게 소득의 전부 또는 소득의 대부분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유지시켜야 하며, ③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기준으로는, 해당 사회보장제도가 법률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며, 그 법에는 구체화된 개인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구에 대하여 구체화된 의무가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준으로는, 해당 사회보장제도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재해보상제도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또는 자치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보상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비용을 산출할 때 ILO에서 포함시키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강제적인 사회보험 ② 둘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임의적 사회보험 ③ 포괄적인 비각출 제도 ④ 셋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예비적 기금 ⑤ 고용재해에 대한 고용주책임제도 ⑥ 가족급여제도 ⑦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 ⑧ 공무원을 위한 특별제도(여기에서 공무원이란 공공행정, 공교육, 보건, 사회문화 서비스에 종사하는 민간인과 군인을 뜻함. 그리고 특별제도는 각출방식이건 아니건 간에 제공되는 연금, 가족급여, 상병, 산업재해보상제도 등을 의미함) ⑨ 첫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공공부조 ⑩ 첫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쟁희생자 원호제도 ⑪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의해 설립된 산업 또는 직업제도로써 법률에 의해 고용주의 책임이 명시되면서도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이다.

한편, ILO의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제도(개인보험, 사회기관 또는 직업기구의 비법률적 복지기금, 집단보험, 공제조합) ②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약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직업연금제도나 퇴직적립기금 ③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피고용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제도, 또는 질병 혹은 출산의 경우와 퇴직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제도 ④ 개인적인 지원과 자선 등이다.

2. ILO 社會保障費의 給與制度和 韓國의 制度

가. ILO의 給與制度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사에서는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102호 협약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영역의 급여제도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먼저 ILO 102호 협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附錄 참조).

1952년에 채택된 ILO의 102호 협약,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은 1944년에 채택된 ‘소득보장권고’와 ‘의료보장권고’에서 제시된 사회보장의 주요 원리와 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이전의 협약과는 달리 사회보험뿐 아니라 공공부조 등 조세방식에 의한 사회보장을 보호방식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험에 의한 보호도 사회보장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보호형태를 다양화 시켰다.

102호 협약의 의의는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등에 대한 협약가입국이 지켜야 할 최저기준을 만들어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부과된다는 데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제1절 통칙(일반규정 및 용어설명)을 비준하여야 하며, 제4절(실업급여), 제5절(노령급여), 제6절(고용재해급여), 제9절(장애급여), 제10절(유족급여) 중 적어도 하나의 절을 포함하여 제2절(의료현물급여), 제3절(상병급여),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가족급여), 제8절(출산급여), 제9절, 제10절 중에서 최소한 3개의 절을 선택해야 한다(附錄 참조). 그리고 제11절(정기금의 산정기준), 제12절(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균등 대우), 제13절(공통규정) 중에서 앞에서 선택한 절과 관련된 규정을 비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14절(부칙)을 비준해야 한다.

102호 협약에서는 영역별 협약으로 분리되어 있던 사회보장 급여를 통합하여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노령급여(Old—Age Benefit),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가족급여(Family Benefit),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등의 포괄적 급여로 설정하였다. 9가지 급여 중 고용재해급여, 가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강제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험에 의한 보호도 사회보장급여로 인정된다. 보험이 첫째,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둘째, 숙련남자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셋째,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102호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이다.

ILO 협약에서 규정한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란 통상적인 의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물서비스만이 제공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의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ILO 협약에서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로 분류되어 있다.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가족급여(Family Benefit), 그리고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는 각각 산업재해보험금, 피보호자(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의 현금급여 외에 고용재해급여와 출산급여의 경우 의료현물서비스, 가족급여인 경우 의식주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도 포함하고 있다(表 II-1 참조). ILO 협약에서의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는 업무로 인한 장애와 유족(미망인 또는 자녀)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ILO 협약에서의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는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아닌 각출이나 고용을 통한 일반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뜻한다.

〈表 II-1〉 ILO 102號 協約의 社會保障給與 性格(現金/現物給與 基準)

| 급여제도 | 급여성격 |
|--------|---------|
| 의료 | 현물급여 |
| 상병급여 | 현금급여 |
| 실업급여 | 현금급여 |
| 노령급여 | 현금급여 |
| 고용재해급여 | 현금/현물급여 |
| 가족급여 | 현금/현물급여 |
| 출산급여 | 현금/현물급여 |
| 장애급여 | 현금급여 |
| 유족급여 | 현금급여 |

資料: ILO 102호 협약

ILO의 102호 협약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정기금(Periodical Payments)의 급여지급단위로 표준수급자(Standard Beneficiary)라는 단위를 사용한다(65조). 표준수급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을 표준화시킨 것인데, 정기금의 급여제도에 따라 상이하다(表 II-2 참조). 그리고 102호 협약은

회원국의 상이한 사회보장제도를 고려하여 정기금(현금)급여의 산정기준으로 3가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급여액이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기초하는 방식(65조), 둘째는 보통 성인남자근로자의 임금에 준하는 소정의 최저임금에 기초한 급여방식(66조), 셋째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자산액을 토대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67조).

〈表 II-2〉 ILO 102號 協約의 社會保障給與 定期金 標準受給者

| 급여제도 | 표준수급자 |
|---------|------------------|
| 상병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 실업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 노령급여 | 연금수급연령의 처를 가진 남성 |
| 고용재해급여: | |
| 노동불능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 장애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 유족 | 두 자녀를 가진 미망인 |
| 출산급여 | 여성 |
| 장애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 유족급여 | 두 자녀를 가진 미망인 |

資料: ILO 102호 협약 67조.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102호 협약에서 제시한 9가지 사회보장영역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②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③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④ 노령급여(Old—Age Benefit), ⑤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⑥ 가족급여(Family Benefit), ⑦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⑧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⑨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 영역의 분류가 각국의 사회보장체제와 유사하지 않기 때

문에 ILO는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나 상황에 따른 급여들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군 입대 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특별수당이나 오스트리아의 보호고용수당, 네덜란드의 친족수당 등이 그 예로 소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102호 협약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정의와 엄밀하게 부합하지 않지만 그 급여를 포괄하는 제도에 관한 자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ILO는 이러한 급여들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총 수치에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 韓國의 給與制度

ILO의 사회보장비 조사 영역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포함될 수 있는 사회보장비의 영역 구성에 있어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영역의 범위에 관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제도 및 급여들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사회보장비의 수입이나 지출이 중복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배타성의 원칙은 필수적으로 지켜질 수 있지만 위의 기준들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급여들을 모두 영역화해야 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영역구성에 있어서의 자의적 선정이라는 위험이 있다. 이는 ILO에 제출한 각국의 사회보장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역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국가들마다 다양한 구성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ILO에 보고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내역은 다른 나라들의 분류에 비해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비에 관한 사항들

이 적절하게 보고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에 있어 전통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이나 발전이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보고가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ILO의 사회보장제도 기준(criteria)에 의거하여 포괄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의 규모를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보장비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고경환 외, 1998년)을 토대로 산출하도록 한다.

1) 醫療現物給與(Medical Care)

ILO 협약에서 규정한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란 통상적인 의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물서비스만이 제공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상적인 의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ILO 협약에서는 상병급여(Sickness Benefit)로 분류되어 있다. ILO의 의료현물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질병에 대해서는, ①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 포함) ②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 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③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품 ④ 필요한 경우의 병원 입원이다.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① 의사 또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간호 ② 필요한 경우의 병원 입원이다.

ILO의 의료현물급여에서는 일반질병으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현물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에서는 급여의 지급기간을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ILO의 의료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의료보험이 있다. 의료보험에는 직장, 공무원·교직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으며, 급여(현물)에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대상자만 시행) 등이 있다.

공공부조로는 의료보호제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재해구호대상자가 해당된다. 의료보호의 경우,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진료비가 전액무료이며 2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비는 전액무료, 입원진료비는 정부와 본인이 분담한다. 또한 국방부의 군인보건의료비(의무물자, 의무장비, 의무시설의 보수 및 시설현대화 등), 법무부의 교정시설채소자 의료비(환자치료, 수용자에 대한 전염병예방접종 등),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의 노인건강진단비, 재가장애인보호의 장애인의료비 등이 의료현물급여에 포함된다.

〈表 II-3〉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醫療現物
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생활보호 | 의료보호 | 500,686 |
| 의료보험 | 요양급여 분만급여 | 4,964,382 |
| 재가장애인보호 | 장애인의료비 | 440 |
| 교정시설재소자보호 |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 | 5,812 |
| 군인보건 | 군인보건의료서비스 | 70,662 |
| 재가노인지원 | 노인건강진단 | 311 |
| 계 | | 5,542,293 |

2) 傷病給與(Sickness Benefit)

상병급여는 고용재해를 제외한 일반질병으로 인한 상병기간 동안의 소득중단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 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에서는 1년간의 상병급여 총 지급일수를 그 1년간 수급자 수의 10배 이내로, 그리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급여기간을 13주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의 정지 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ILO의 상병급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사업장의 유급상병휴가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허용하고 있는 상병휴가기간을 보면, 연간 6일 이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최장 60일을 인정하

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경우는 6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상병급여의 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失業給與(Unemployment Benefit)

ILO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로 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를 실업급여 사유로 하고 있다.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26주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들 수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취직촉진수당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에게 숙박료나 교통비로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재취업하여 이사한 경우에 지급되는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는 법률(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퇴직발생 사유에 관계없이 확일적으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제도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퇴직금이 보편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법정퇴직금제도가 법률(근로기준법)로 제정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表 II-4〉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失業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10,456 |
| 퇴직금 | - | 5,452,948 |
| 계 | | 5,463,404 |

4) 老齡給與(Old-Age Benefit)

ILO에서는 노령급여의 지급이유를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소정의 연령”이란 65세를 넘지 아니하는 노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국가의 노인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65세보다 높은 연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령급여에는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와 공적부조 형식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가 포함된다.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등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재가노인지원으로 노인교통비, 노령수당이 있다.

〈表 II-5〉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老齡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국민연금 |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 | 1,043,187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수당 | 2,246,171 |
| 사립교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수당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319,250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기여금반환 | 781,179 |
| 재가노인지원 | 노인교통비, 노령수당 | 230,010 |
| 계 | | 4,619,797 |

5) 雇傭災害給與(Employment Injury Benefit)

고용재해급여란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소정의 질병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현물급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급여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 질병, ② 일반 질병에 기인하며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노동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③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소정의 정도를 넘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④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미망인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이다. 다만, 미망인이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ILO의 고용재해급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급여종류에는 현금급여인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휴업급여 등이 있으며 현물급

여인 요양급여가 있다.

〈表 II-6〉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僱傭災害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현금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의비 | 1,012,363 |
| | 현물급여: 요양급여 | 342,974 |
| 계 | | 1,355,337 |

6) 家族給與(Family Benefit)

ILO의 가족급여란 자녀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기금(Periodical Payments)과 식료품, 의류, 주거, 가사보조 등의 현금/현물급여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가족을 지원하는 급여제도는 없으나, 저소득편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지원과 저소득편부모가정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아동의 보육시설이용지원과 아동시설보호가 있다.

아동양육비지원은 저소득편부모가정의 아동에게 건강하게 성장토록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6세 이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편부모가정의 자녀학비지원은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의 보육시설이용지원은 보호자의 노동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호자에

게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은 저소득층가정의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다. 아동복지시설보호는 시설아동의 정서함양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아동이다.

〈表 II-7〉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현 금 급 여 | 현 물 급 여 | 지출액 |
|----------------|------------------|--|---------|
| 재가부녀 및 모자 가정지원 | 아동양육비, 보상금, 자녀학비 | - | 7,607 |
| 재가부자가정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 - | 1,563 |
| 국가보훈 | 학자금지원 | | 1,907 |
| 보육시설지원 | - | 민간경상이전, 시설별지원, 아동별지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 시설비, 보육정보센터운영비, 자치단체자본이전 | 237,460 |
| 아동시설보호 | - |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직업훈련 및영농훈련, 자치단체자본이전 | 45,545 |
| 계 | | | 294,082 |

7) 出産給與(Maternity Benefit)

ILO에서는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로서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와 국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에 기인하는 근로소득의 정지”를 들고 있다.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한 출산의료급여에는 최소한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간호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의 입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산의료급여는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기인하는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한 정기금

(Periodical Payments) 급여는 102호 협약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기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직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로 제한할 수 있다(附錄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유급휴직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초자료가 없어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다.

8) 障礙給與(Invalidity Benefit)

장애급여의 사유는 규정된 범위의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상태로, 상병급여 수혜기간이 끝난 후에도 장애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ILO 102호 협약에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 또는 노령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장애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급여로는 국민연금의 장해연금과 장해일시보상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군인연금의 상이연금과 국가보훈사업의 상이연금제도가 있다. 또한 공공부조로 재가장애인보호의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장애급여에 포함된다.

〈表 II-8〉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障礙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국민연금 | 장해연금, 장해일시보상금 | 20,931 |
| 공무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5,687 |
| 사립학교직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1,284 |
| 군인연금 | 상이연금 | 4,968 |
| 국가보훈 | 보훈보상금(상이연금) | 374,676 |
| 재가장애인보호 |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 7,200 |
| 계 | | 414,746 |

9) 遺族給與(Survivors' Benefit)

유족급여는 부양자의 사망시 배우자 또는 피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이다. 우리나라의 유족급여제도로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국가보훈의 보훈보상금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등이 유족급여에 포함된다.

〈表 II-9〉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遺族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 53,527 |
| 국가보훈 | 보훈보상금(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기타) | 374,575 |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급여가산금 | 145,731 |
| 사립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 15,114 |
| 군인연금 |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 85,537 |
| 계 | | 674,484 |

10) 其他給與(Other Benefits)

기타급여로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소년·소녀가장보호, 의사상자예우와 재해구호사업이 해당된다. 그리고 귀순북한동포보호제도(정착금, 보로금, 주거지원,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가 있다.

〈表 II-10〉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其他給與(1996)
(단위: 백만원)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생계보호 | 거택보호, 시설보호 | 379,351 |
| 교육보호 | 중학생수업료 및 입학금, 실업계고교 생수업료 및 입학금, 인문계고교생수 업료 및 입학금 | 70,194 |
| 아동건전육성 | 소년·소녀가장보호 | 6,698 |
| 의사상자예우 | 보상금 | 709 |
| 재해구호 | 주택피해복구비, 이재민 | 29,017 |
| 귀순북한동포보호 |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 797 |
| 계 | | 486,766 |

Ⅲ. OECD의 社會保障費

1. 社會保障費의 定義와 分類體系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에 관한 데이터베이스(SOCX: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안에 포함되어 있는 OECD의 사회보장비통계는 OECD회원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경향을 모니터하고 사회보장지출 구성에 관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SOCX는 기본적으로 1960년대 이후를 다루고 있으며, 1980년까지는 1980년대 초에 일률적으로 조사하였으나 그 이후는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0~1993년간의 25개 회원국 사회보장비 통계를 재수집하여 1996년에 책자로 발간(*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하였다.

SOCX에서는 사회보장비(Social Expenditure)란 “가구 또는 개인에게 공공 또는 민간부문(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지출에 한함)이 급여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총비용에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과 개인적인 계약이나 이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SOCX의 사회지출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용역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시장거래와 가구간 이전지출은 사회보장비의 지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급여 제공을 위해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사회보장비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비용이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ALMP: Active Labor Market Programs)과 보건의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Health)에서는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는 행정비용이 직업상담이나 병원운영비

등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SOCX에서는 구체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13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表 III-1 참조). 사회보장비 지출의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이 외에 보건과 주택이 포함된 폭넓은 사회보장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表 III-1〉 SOCX의 社會保障費 分類(1996年 基準)

| 영역 | 항목 | 세부항목 |
|------------------|------------------|---|
| 1. 노령연금급여 | 1.1 일반노령연금 | 1.1.1 개인급여 1.1.2 배우자보충급여 1.1.3 아동보충급여 |
| | 1.2 공무원노령연금 | |
| | 1.3 재향군인노령연금 | |
| | 1.4 기타노령연금급여 | |
| | 1.5 조기퇴직연금 | |
| 2. 장애연금급여 | 2.1 장애연금 | 2.1.1 개인급여 2.1.2 배우자보충급여 2.1.3 아동보충급여 |
| | 2.2 장애공무원연금 | |
| | 2.3 장애아동연금 | |
| | 2.4 장애재향군인연금 | |
| | 2.5 기타장애연금급여 | |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 - | - |
| 4. 상병급여 | - | - |
| 5.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5.1 시설보호 | 5.1.1 아동 |
| | | 5.1.2 65세 미만의 성인 |
| | | 5.1.3 65세 이상의 성인 |
| | 5.2 가정봉사서비스 | 5.2.1 아동 |
| | | 5.2.2 65세 미만의 성인 |
| | | 5.2.3 65세 이상의 성인 |
| | 5.3 주간보호와 재활 서비스 | 5.3.1 아동 |
| | | 5.3.2 65세 미만의 성인 |
| 5.3.3 65세 이상의 성인 | | |
| 5.4 기타현물급여 | 5.4.1 아동 | |
| | 5.4.2 65세 미만의 성인 | |
| | 5.4.3 65세 이상의 성인 | |

〈表 III-1〉 계속

| 영역 | 항목 | 세부항목 |
|------------------|---|--|
| 6. 유족 | 6.1 유족연금 6.2 공무원유족연금 6.3 유족현물급여 6.4 기타유족현금급여 | 6.1.1 배우자(유족)연금 6.1.2 고아연금 6.1.3 기타연금 |
| 7. 가족현금급여 | 7.1 아동을 위한 가족수당 7.2 가족부양급여 7.3 기타 피부양인급여 7.4 편부모현금급여 7.5 기타가족현금급여 7.6 출산 및 육아 휴가 | - |
| 8. 가족서비스 | 8.1 공식주간보호 8.2 개인서비스 8.3 가구서비스 8.4 기타 | - |
| 9.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9.1 노동시장의 훈련 9.2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9.3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 9.1.1 현금 9.1.2 서비스 9.2.1 현금 9.2.2 서비스 9.3.1 현금 9.3.2 서비스 9.4.1 현금 9.4.2 서비스 |
| 10. 실업급여 | 10.1 실업보상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10.3 퇴직수당 | - |
| 11. 보건 |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 - |
| 12. 주택급여 | 12.1 임대료보조 및 현금급여 | 12.1.1 노인 12.1.2 장애인 12.1.3 가족 12.1.4 기타 |
| 13. 기타급여 | 13.1 저소득 13.2 원주민 13.3 기타 13.4 이민자 및 망명자 |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2.1 현금급여 13.2.2 서비스 13.3.1 현금급여 13.3.2 서비스 13.4.1 현금급여 13.4.2 서비스 |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2. 社會保障費 支出의 領域別 概念과 韓國의 制度

본절에서는 SOCX의 13개 사회보장영역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OECD의 요청에 의해서 추계된 통계(고경환 외, 1998년)를 토대로 SOCX의 사회보장제도 기준에 의거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노령현금급여는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근로자가 일정연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대체소득으로 제공되고 있다. 노령현금급여에는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퇴직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수당이나 다른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령현금급여에서 제외된다.

노령현금급여는 ‘일반노령연금’, ‘공무원노령연금’, ‘재향노령연금’, ‘기타노령현금급여’ 그리고 ‘조기퇴직연금’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을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반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공무원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퇴직연금 등에 해당되며 ‘재향노령연금’은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등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기타 노령 현금급여’와 ‘조기퇴직연금’에 해당되는 제도가 없다.

〈表 III-2〉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老齡現金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 부 항 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일반노령연금 | 개인급여 | 국민연금 |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 | 1,043,187 |
| | 배우자보충급여 | - | - | - |
| | 아동보충급여 | - | - | - |
| 공무원노령연금 | -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수당 | 2,246,171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수당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 319,250 |
| 재향군인노령연금 |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기여금반환 | 781,179 |
| 기타노령연금급여 | - | - | - | - |
| 조기퇴직연금 | - | - | - | - |
| 계 | | | | 4,389,787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나. 障 碍 現 金 給 與 (Disability Cash Benefits)

장애연금급여란 장애(선천성 장애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뜻한다.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영역으로 분류되어 장애연금급여에서 제외된다. 현물급여의 경우는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SOCX의 장애현금급여는 ‘장애연금’, ‘장애공무원연금’, ‘장애아동연금’, ‘장애재향군인연금’, 그리고 ‘기타 장애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에 해당되며, ‘장애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에, ‘장애재향군인연금’은 군인연금의 상이연금과 국가보훈사업의 상이연금제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기타장애현금급여’와 ‘장애아동연금’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表 III-3〉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障礙現金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 부 항 목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장애연금 | 개인급여 | 국민연금 | 장애연금, 장애일시연금 | 20,931 |
| | 배우자보충급여 | - | - | - |
| | 아동보충급여 | - | - | - |
| 장애공무원연금 | - | 공무원연금 |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 5,687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장애연금, 장애보상금 | 1,284 |
| 장애아동연금 | - | - | - | - |
| 장애재향군인연금 | - | 군인연금 | 상이연금 | 4,968 |
| | | 국가보훈 | 보훈보상금 | 374,676 |
| 기타 장애현금급여 | - | - | - | - |
| 계 | | | | 407,546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다.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ccupational Injury & Disease)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 그리고 연금 등

의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급여종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휴업급여 등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OECD 사회보장 지출 항목 중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表 III-4〉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 부 항 목 | 제 도 | 급 여 | 지 출 액 |
|-----|---------|--------|-------------------------------|-----------|
| - | - | 산업재해보험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1,012,363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라. 傷病給與(Sickness Benefits)

상병급여는 일반질병으로 인한 상병기간 동안의 소득중단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다. 우리 나라에는 상병급여제도가 없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사업장의 유급상병휴가가 있으나 기초자료가 없어 통계추계를 할 수 없다.

마. 老人과 障礙人 서비스(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SOCX의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영역은 ‘시설보호’, ‘가정봉사서비스’,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그리고 ‘기타현물급여’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설보호’에는 정부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보호, 노인시설보호, 그리고 부랑인

시설보호가 있으며, ‘가정봉사서비스’에는 재가노인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양성사업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고 재가장애인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도 이에 해당된다.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에는 재가장애인주간보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민간단체지원, 재가노인주간보호(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지원), 재활원운영, 재활훈련 그리고 재활병원의 재활치료 등이 있다. ‘기타 현물급여’에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등이 있다.

〈表 III-5〉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老人과 障礙人 서비스(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시설보호 | 기타* | 노인시설보호 | 자치단체경상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 39,367 |
| | | 장애인복지시설보호 | 자치단체경상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 69,146 |
| | | 부랑인시설보호 | 부랑인시설운영비, 부랑아동시설운영비, 부랑인재활사업비, 자치단체자본이전 | 14,423 |
| 가정봉사서비스 | 기타* | 재가노인지원 | 가정봉사원양성 및 파견사업 | 1,848 |
| | | 재가장애인보호 | 자치단체자본이전 | 9,762 |
|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 기타* | 재가노인주간보호 |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민간경상이전 | 14,576 |
| | | 재가장애인주간보호 | 장애인복지관운영비계, 장애인체육관운영비, 재활병원 운영비,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운영, 보상금 | 20,462 |
| | | 장애인민간단체지원 | 민간경상이전 | 2,091 |
| | | 재활지원 | 운영비, 훈련비, 병원치료비 | 4,180 |
| 기타 현물급여 | 기타* | 재가장애인보호 |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 2,143 |
| 계 | | | | 177,998 |

註: * SOCK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세부항목(表 III-1 참조)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바. 遺族給與(Survivors)

유족급여는 가구주의 사망시 배우자 또는 피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인데, 유족급여 수령자의 어린이를 위한 수당과 지원금도 ‘유족급여’부문에 포함된다. SOCX의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 ‘공무원유족연금’, ‘유족현물급여’, 그리고 ‘기타 유족현금급여’ 등 4개의 항목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족연금’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국가보훈의 보훈보상금이 있다. ‘공무원유족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등이 있으며, ‘유족현물급여’와 ‘기타 유족현금급여’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다.

〈表 III-6〉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遺族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 53,527 |
| | 고아연금 | - | - | - |
| | 기타연금 | - | - | - |
| | 기타* | 국가보훈 | 보훈보상금 | 374,575 |
| 공무원유족연금 | - |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급여가산금 | 145,731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 15,114 |
| | | 군인연금 |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 85,537 |
| 유족현물급여 | - | - | - | - |
| 기타유족현금급여 | - | - | - | - |
| 계 | | | | 674,484 |

註: * SOCK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세부항목(表 III-1 참조)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사. 家族現金給與(Family Cash Benefits)

SOCX의 ‘가족현금급여’ 6개 항목에는 ‘아동을 위한 가족수당’, ‘가족부양급여’, ‘기타 피부양인 급여’, ‘편부모 현금급여’, ‘기타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그리고 ‘출산 및 육아 휴가’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급여제도는 없으나, 저소득편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지원(‘아동을 위한 가족수당’)과 저소득편부모가정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가족부양급여’)이 있다. ‘기타 피부양인 급여’와 ‘편부모에 대한 현금급여’, 그리고 ‘기타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 휴가’에는 출산유급휴직이 해당되는데, 유급휴직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기초자료가 없어 추계를 할 수 없다.

〈表 III-7〉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現金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아동을 위한 가족수당 | - | 재가편부모가정지원 | 아동양육비 | 778 |
| 가족부양급여 | - | 재가편부모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보상금 | 8,392 |
| | | 국가보훈 | 학자금지원 | 1,907 |
| 기타피부양급여 | - | - | - | - |
| 편부모현금급여 | - | - | - | - |
| 기타 가족현금급여 | - | - | - | - |
| 출산 및 육아휴가 | - | - | - | - |
| 계 | | | | 11,077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아. 家族 서비스(Family Services)

SOCX에서의 ‘가족 서비스’ 4개 항목에는 ‘공식주간보호’, ‘개인서비스’, ‘가구서비스’, 그리고 ‘기타 서비스’가 있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식주간보호’에는 아동시설보호, 모자보호, 저소득층 보육아동을 위한 시설지원 등이 있다. ‘개인서비스’와 ‘가구서비스’에는 각각 사회복지관운영과 아동건전육성이, ‘기타서비스’에는 고아에 대한 아동건전육성, 재가편부모가정지원 등이 해당된다.

〈表 III-8〉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家族 서비스(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공식주간보호 | - | 보육시설지원 | 민간경상이전,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보육시설차량 운영, 시설비,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자치단체자본이전 | 237,460 |
| | | 아동시설보호 |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직업 훈련 및 영농훈련, 자치단체 자본이전 | 45,545 |
| | | 모자보호 및 부녀직업보도시설 |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 9,348 |
| 개인서비스 | - | 사회복지관운영 | 민간경상이전,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자본이전 | 31,665 |
| 가구서비스 | - | 아동건전육성 | 민간경상이전 | 133 |
| 기타 | - | 가정복지 | 민간경상이전 | 205 |
| | | 아동건전육성 | 결연기관운영, 입양기관운영, 입양아동양육보조, 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1,694 |
| | | 재가부녀 및 모자 가정지원 | 성폭력상담소운영비 | 223 |
| 계 | | | | 326,273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자. 積極的 勞動市場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는 신규취업자 또는 실업자의 취업 여건을 향상시키고 소득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사회지출(교육비 제외)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의 훈련’,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고용장려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행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훈련’에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능력개발수당,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과 단기훈련,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비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항목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양성훈련이, ‘고용장려 프로그램’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에는 고용촉진훈련과 직업재활센터건립,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해당되고, ‘고용서비스와 행정’에는 고용보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비 지원,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상비보조,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지방노동관서 등의 운영비가 있다.

〈表 III-9〉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積極的인 勞動市場 프로그램(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노동시장의 훈련 | 현금 | - | - | - |
| | 서비스 | 실업자훈련사업 | 고용촉진훈련, 단기적응훈련, 일하는 여성의 집 | 25,221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훈련 및 교육지원비 | 8,568 |
| | 실업급여 | 훈련비용 | 75,941 | |
|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 현금 | - | - | - |
| | 서비스 | 청소년훈련사업 | 양성훈련 | 61,881 |
| 고용장려를 위 한 프로그램 | 현금 | - | - | - |
| | 서비스 | 고용안정사업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 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 9,270 |
|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 현금 | - | - | - |
| | 서비스 | 직업재활 | 교육홍보, 기술지도, 학교운영 및 지원, 고용보조금지급, 훈련 기관보조 등 | 14,472 |
| | | 장애인보호사업 |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 538 |
| 고용서비스와 행정 | - | 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사업운영지원비 | 6,701 |
| | | 노동부관련사업 | 고급인력정보센터경상보조금, 고령자인재은행경상비보조, 일 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비, 한국기술교육대학 출연금, 중앙 고용정보관리소운영 및 사업비, 고용보험전산망 설치·운영비, 직 업훈련사업운영비, 고용정책실 운영비, 지방노동관서고용관련 업무비 등 | 52,719 |
| | |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운영 | 운영비 | 8,739 |
| | | 산업인력관리공단 운영 | 운영비 | 71,924 |
| 계 | | | | 335,974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차. 失業給與(Unemployment)

SOCX에서의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해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이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실업급여’영역은 ‘실업보상’,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수당’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실업보상’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수당’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있다.

〈表 III-10〉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失業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실업보상 | -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촉진수당(조기제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 10,456 |
|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 - | | | |
| 퇴직수당 | - | 법정퇴직금 | 퇴직금 | 5,452,948 |
| 계 | | | | 5,463,404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카. 保健(Health)

SOCX에서는 보건에 관한 지출이란 모든 보건영역의 지출이 아니고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험기관)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지출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기준으로 보면 ‘보건’ 영역에는 ‘보건의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Health)’항목뿐이며 세부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는 직장, 공무원 및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이 포함된다. 급여의 형태로 의료보험은 현물급여(요양급여, 분만급여)와 현금급여(본인부담보상금, 분만수당 등)로 나눌 수 있으나, SOCX에서는 보건의 공공지출을 산출하는데 현금급여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현금급여가 보건의 급여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해당되는 공공부조의 의료보호제도도 보건의 공공지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이 있다. 여기에는 국민계정의 '보건지출'(최종소비지출, 보조금, 사회보장수혜금 및 사회부조금, 기타경상이전, 총고정자본형성 등), 군인보건의료비,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 재가노인지원의 건강진단비 등이 해당된다.

〈表 III-11〉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保健(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보건의 공공지출 | - | 생활보호 | 의료보호 | 500,686 |
| | | 의료보험 | 요양급여, 분만급여 | 4,964,382 |
| | | 산업재해보험 | 요양급여 | 342,974 |
| | | 교정시설재소자보호 |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 | 5,812 |
| | | 군인보건 | 군인보건의료서비스 (의무물자 등) | 70,662 |
| | | 재가노인지원 | 노인건강진단 | 311 |
| | | 정부보건지출 | 국민계정 최종소비지출, 국민계정보조금,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금, 기타경상이전, 국민계정 총고정자본형성, 국민계정 자본이정 | 944,800 |
| 계 | | | 6,829,627 |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타. 住宅給與(Housing Benefits)

SOCX의 주택급여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거주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개인에게 지원하는 임대보조금(rent subsidies) 또는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를 의미한다. ‘주택급여’영역에는 ‘임대료 보조 및 현금급여’ 항목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다.

파. 其他 給與(Other Contingencies)

SOCX의 기타급여는 특정된 사회보장급여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다른 급여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를 뜻한다. ‘기타급여’영역의 4개 항목은 ‘저소득’, ‘원주민’, ‘기타’, 그리고 ‘이민자 및 망명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저소득’ 항목에는 생활보호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노령수당,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이 있으며, ‘원주민’ 항목은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이다. ‘기타’에는 의사상자예우와 재해구호사업이 해당된다. 그리고 ‘이민자 및 망명자’에는 귀순복한동포 보호제도(정착금, 주거지원,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가 있다.

〈表 III-12〉 SOCX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其他給與(1996)

(단위: 백만원)

| 항 목 | 세부항목 | 제 도 | 급 여 | 지출액 |
|-----------|------|----------|--|---------|
| 저소득 | 현금급여 | 생계보호 | 거택보호, 시설보호 | 379,351 |
| | | 교육보호 | 중학생수업료 및 입학금, 실업계고교생수업료 및 입학금, 인문계고교생수업료 및 입학금 | 70,194 |
| | | 재가장애인보호 |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 7,200 |
| | | 재가노인지원 | 노령수당 | 67,158 |
| | | 아동건전육성 | 소년·소녀 가장보호 | 6,698 |
| | 서비스 | - | - | - |
| 원주민 | 현금급여 | - | - | - |
| | 서비스 | - | - | - |
| 기타 | 현금급여 | 의사상자예우 | 보상금 | 709 |
| | | 재해구호 | 주택피해복구비, 이재민 | 29,017 |
| | 서비스 | - | - | - |
| 이민자 및 망명자 | 현금급여 | 귀순북한동포보호 |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 797 |
| | 서비스 | - | - | - |
| 계 | | | | 561,124 |

資料: 고경환 외,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IV. IMF의 社會保障費

IMF에서는 회원국의 정부재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재정흑자 및 적자, 정부 수입 및 보조금, 지출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매년 「정부재정통계연감」(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을 발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IMF의 재정통계 개념에 따라 작성된 이 통계가 재정경제부의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책자로 매년 발간된다. IMF 정부재정 통계에서 정의하는 중앙정부지출(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은 14개항의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된다(表 IV-1 참조). 이 중 6번째 항목인 ‘사회보장·복지비(Social Security and Welfare)’가 사회보장재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表 IV-1〉 IMF 基準에 의한 中央政府支出의 機能別 分類

| | 내역 |
|-------------------|--|
| 중앙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 | 1.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 |
| | 2. 방위(Defense) |
| | 3.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
| | 4. 교육(Education) |
| | 5. 보건(Health) |
| | 6. 사회보장·복지(Social Security and Welfare) |
| | 7. 주택·지역사회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
| | 8. 오락·문화·종교(Recreational, Cultural, and Religious Affairs) |
| | 9. 연료·에너지(Fuel and Energy) |
| | 10. 농림·수산·수렵(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
| | 11. 광업·제조업·건설업(Mining, Mineral Resources,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
| | 12. 수송·통신(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
| | 13. 기타 경제사업(Other Economic Affairs and Services) |
| | 14. 구분류외지출(Other Expenditures) |

資料: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발간하는 『예산개요』의 예산내역으로부터 IMF 기준을 적용한 사회보장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된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예산내역에서는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에 속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훈(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근로자복지(Worker’s Welfare), 기타 사회복지(Other Activities for Social Affairs)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계에서는 재정용자, 국유재산관리, 농어촌특별세관리 및 군인연금의 사회보장 예산이 포함된다. 기금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진폐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보장 재정으로 포함된다(表 IV-2 참조).

〈表 IV-2〉 IMF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財政 內容

| | 소관부처별 내용 | | | | |
|-------------|----------|--|-------|---|---|
|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기금 |
| | 부처 | 내역 | 부처 | 내역 | |
| 사회보장 ·복지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 · 의료보험 · 기타 사회 복지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재정용자 ○사회보장 · 의료보험 · 기타 사회 복지 | —국민연금기금 —진폐기금 —산업재해예방 기금 —장애인고용촉 진 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 지사사업기금 —군인복지기금 —사회복지사업 기금 |
| | 노동부 | ○사회보장 · 의료보험 (산재예방) · 근로자복지 | | —국유재산관리 ○사회보장 · 기타 사회 복지 | |
| | 국가보훈처 | ○사회보장 · 보훈 (보훈병원 포함) | | —농어촌특별세 관리 ○사회보장 · 국민보험 | |
| | 총무처 | ○사회보장 · 기타 사회 복지 (사회복지 부담금) | 국방부 | —군인연금 ○방위비 · 일반지원 (군인연금) | |

資料: 박인화, 『IMF 기준에 의한 보건·사회보장재정의 추이와 국제비교』, 『현안요약』,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8. 3.

IMF의 社會保障費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재정은 1988년에 7.4%를 차지하였다. 사회보장재정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6년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재정의 10.6%를 사회보장재정에 지출하였다. 이를 회계종류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보장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이다. 특별회계에서는 5.5%, 기금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은 55.8%이다.

〈表 IV-3〉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 水準(1988~1996)
(단위: 십억원, %)

| 연도 | 중앙정부 지출 | 사회보장재정 | 중앙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재정 비율 |
|------|---------|--------|------------------------|
| 1988 | 19,454 | 1,445 | 7.4 |
| 1989 | 23,776 | 1,982 | 8.3 |
| 1990 | 29,004 | 2,615 | 9.0 |
| 1991 | 35,619 | 3,381 | 9.5 |
| 1992 | 40,446 | 4,083 | 10.0 |
| 1993 | 45,010 | 4,497 | 10.0 |
| 1994 | 53,887 | 5,750 | 10.7 |
| 1995 | 62,320 | 6,168 | 9.9 |
| 1996 | 72,600 | 7,715 | 10.6 |

資料: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도.

〈表 IV-4〉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의 內譯(1996)
(단위: 백만원)

| | 중앙정부 지출 | | | |
|------------|------------|------------|------------|-----------|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 사회보장재정 | 7,715,163 | 3,432,823 | 1,142,982 | 3,130,358 |
| 사회보장 | 6,437,020 | 2,310,990 | 1,111,982 | 3,014,048 |
| 사회복지 | 1,228,143 | 1,071,833 | 31,000 | 125,310 |
| 기 타 | 50,000 | 50,000 | - | - |
| 중앙정부 지출 총계 | 72,600,116 | 46,124,571 | 20,737,717 | 5,627,325 |

資料: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1997.

<表 IV-5>는 IMF 기준에 따라 산출된 사회보장재정 비율에 관하여 OECD 가입국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사회보장부문에 가장 많은 재정 투자를 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사회보장재정 비율이 52.33%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스웨덴(51.07%), 폴란드(50.10%), 스위스(48.68%) 등이 사회보장부문 지출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OECD에 1990년대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비율은 10.6%인 반면에 체코, 헝가리, 멕시코는 사회보장비율이 각각 24.99%, 28.67%, 20.07%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5> 國家別 中央政府 支出 中 社會保障財政 比率

(단위: %)

| 국 가 | 기준연도 | 사회보장재정 비율 |
|-------|------|-----------|
| 한국 | 1996 | 10.60 |
| 캐나다 | 1994 | 39.79 |
| 미국 | 1996 | 28.83 |
| 호주 | 1996 | 33.73 |
| 일본 | 1993 | 36.80 |
| 뉴질랜드 | 1996 | 39.32 |
| 오스트리아 | 1995 | 44.99 |
| 덴마크 | 1995 | 43.22 |
| 핀란드 | 1995 | 40.02 |
| 프랑스 | 1992 | 45.00 |
| 독일 | 1991 | 45.30 |
| 그리스 | 1995 | 17.93 |
| 아이슬랜드 | 1995 | 23.68 |
| 아일랜드 | 1994 | 27.03 |
| 룩셈부르크 | 1995 | 52.33 |
| 네덜란드 | 1996 | 37.66 |
| 노르웨이 | 1995 | 37.25 |
| 포르투갈 | 1994 | 39.00 |
| 스페인 | 1994 | 39.07 |
| 스웨덴 | 1996 | 51.07 |
| 스위스 | 1995 | 48.68 |
| 터키 | 1996 | 4.46 |
| 영국 | 1995 | 31.12 |
| 멕시코 | 1995 | 20.07 |
| 체코 | 1996 | 24.99 |
| 폴란드 | 1996 | 50.10 |
| 헝가리 | 1990 | 28.67 |

資料: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7.

V. 韓國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

국제기구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1996년)은 18조 8,509억원으로 나타났다(表 V-1 참조). 이는 1996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4.83%에 해당된다. 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가운데 의료현물급여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실업급여(29.0%), 노령급여(24.5%) 순이다. 나머지 급여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表 V-1 참조).

〈表 V-1〉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6)
(단위: 백만원)

|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 지출규모 |
|------------|------------------|
| 1. 의료현물급여 | 5,542,293(29.4%) |
| 2. 상병급여 | - |
| 3. 실업급여 | 5,463,404(29.0%) |
| 4. 노령급여 | 4,619,797(24.5%) |
| 5. 고용재해급여 | 1,355,337(7.2%) |
| 6. 가족급여 | 294,082(1.6%) |
| 7. 출산급여 | - |
| 8. 장애급여 | 414,746(2.2%) |
| 9. 유족급여 | 674,484(3.6%) |
| 10. 기타급여 | 486,766(2.6%) |
| 계 | 18,850,909 |
| GDP 대비 비율 | 4.83% |

현재 ILO에 보고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지출 현황은 1993년의 것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는 GDP의 2.06%(행정비용 제외)로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보고한 ILO의 사회보장비 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포함될 수 있는 사회보장비의 항목 구성에 있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항목의 범위에 관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제도 및 급여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현황은 다른 나라들의 분류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비에 관한 사항들이 적절하게 보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LO의 항목 구성의 기준(criteria)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항목을 재구성하고 이들의 규모를 추계하여 본 결과, 1993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GDP의 4.06%로 나타났다(表 V-2 참조). 가장 최근에 ILO에 보고된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表 V-3>과 같다.

<表 V-2> ILO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3)
(단위: 백만원)

| 사회보장비 지출 영역 | 지출 규모 |
|-------------|------------------|
| 1. 의료현물급여 | 3,141,174(28.9%) |
| 2. 상병급여 | - |
| 3. 실업급여 | 2,986,561(27.5%) |
| 4. 노령급여 | 2,668,073(24.6%) |
| 5. 고용재해급여 | 853,136(7.8%) |
| 6. 가족급여 | 135,774(1.2%) |
| 7. 출산급여 | - |
| 8. 장애급여 | 275,269(2.5%) |
| 9. 유족급여 | 479,196(4.4%) |
| 10. 기타급여 | 303,362(2.7%) |
| 계 | 10,842,545 |
| GDP 대비 비율 | 4.06% |

韓國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

<表 V-3> ILO 基準에 의한 國家別 社會保障費 比率

(단위: %)

| 국 가(년 도) |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
|----------------------|-----------------|
| 한 국(1993) | 4.06 |
| 미 국(1990.10~1991. 9) | 14.78 |
| 일 본(1993. 4~1994. 3) | 17.65 |
| 영 국(1993. 4~1994. 3) | 20.86 |
| 독 일(1993) | 25.57 |
| 프랑스(1990) | 23.20 |
| 스웨덴(1993) | 38.99 |

資料: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Inquiry*.

다음으로 OECD(SOCX)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1996년)은 20조 1,897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GDP의 5.18%이다. 영역별로 보면 보건영역이 3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급여(27.1%), 노령연금급여(21.7%),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5.0%) 순이다. 장애연금급여 등 나머지 급여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表 V-4 참조). <表 V-5>는 OECD(SOCX) 기준에 의한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보장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IMF 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재정의 10.6%인 7조 7,151억원을 사회보장·복지비에 지출하였다(表 IV-3 참조). 이를 회계종류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보장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5%, 55.8%이다. 국가별 1996년의 중앙정부재정 대비 사회보장재정 비율은 <表 V-6>와 같다.

〈表 V-4〉 OECD 基準에 의한 韓國의 社會保障費 規模(1996)
(단위: 백만원, %)

| 사회보장비 지출영역 | 지출 규모 |
|-------------------|-----------------|
| 1. 노령연금급여 | 4,389,787(21.7) |
| 2. 장애연금급여 | 407,546(2.0) |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 1,012,363(5.0) |
| 4. 상병급여 | - |
| 5.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177,998(0.9) |
| 6. 유족급여 | 674,484(3.3) |
| 7. 가족연금급여 | 11,077(0.1) |
| 8. 가족서비스 | 326,273(1.6) |
|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335,974(1.7) |
| 10. 실업급여 | 5,463,404(27.1) |
| 11. 보건 | 6,829,627(33.8) |
| 12. 주택급여 | - |
| 13. 기타급여 | 561,124(2.8) |
| 계 | 20,189,657 |
| GDP 대비 비율 | 5.18 |

〈表 V-5〉 OECD 基準에 의한 國歌別 社會保障費 比率(1993)
(단위: %)

| 국 가 |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
|-----|-----------------|
| 한 국 | 4.34 |
| 미 국 | 15.64 |
| 일 본 | 12.44 |
| 영 국 | 22.84 |
| 독 일 | 28.27 |
| 프랑스 | 28.73 |
| 스웨덴 | 38.03 |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韓國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

〈表 V-6〉 國家別 中央政府財政 對比 社會保障財政 比率(1996)
(단위: %)

| 국 가 | 사회보장재정 비율 |
|------|-----------|
| 한 국 | 10.60 |
| 미 국 | 28.83 |
| 호 주 | 33.73 |
| 뉴질랜드 | 39.32 |
| 네덜란드 | 37.66 |
| 이스라엘 | 25.76 |
| 스웨덴 | 51.07 |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7.

ILO와 OECD, 그리고 IMF의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기준을 비교해 볼 때 OECD의 사회보장제도기준이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장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와 반면에 IMF의 사회보장비 통계는 중앙정부재정만을 다루고 있고 급여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ILO나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과의 비교가 매우 제한된다. 그리고 사회보장비의 큰 영역의 분류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IMF의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세부 영역의 국제비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급여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는 ILO와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 추계기준을 비교해 볼 때 각 추계기준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다. ILO의 경우는 의료현물급여를 독립된 영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반해, OECD는 의료급여를 보건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ILO의 노령급여에 해당되는 OECD의 급여로는 노령연금급여와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를 들 수 있다. ILO의 가족급여는 OECD의 가족연금급여와 가족 서비스에, 장애급여의 경우는 OECD의 장애연금급여,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다. OECD의 주택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는 ILO에는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비용 통계는 재정경제부가 발간하는 『예산개요』와 『한국종합재정수지』에 수록되어 있다. “『예산개요』에 수록되는 통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비용만을 포함시킨다. 『예산개요』의 사회보장관련 통계로는 ‘사회보장예산’과 ‘사회개발예산’이 있다. ‘사회보장예산’에는 의료보험, 보훈, 근로자복지, 기타 사회복지, 국민연금 등 각 정부 부처의 사회보장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보장비를 추계하는 국제기준에 근접해 있으나, ILO나 OECD의 통계에 포함되는 급여들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사회개발예산’은 문화예술, 사회교육 및 체육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비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종합재정수지』는 IMF의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로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예산개요』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와는 달리 특별회계 및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종합재정수지』의 사회보장비 통계에는 ILO나 OECD 등에서 사회보장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일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보건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보장비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수치조차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고 연구자료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비교의 경우에 어려움을 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사회보장비 통계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과 사회보장비를 국제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의 표준화된 사회보장비의 추계분류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각종 사회보장비 통계체제를 재구성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사회보장비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고경환,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 고경환·계훈방,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1997. 4.
- 김성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 1998. 11.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 『노사개혁백서』, 1997.
- ,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 , ILO 규정, <http://www.molab.go.kr>, 1997.
-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박인화, 「IMF 기준에 의한 보건·사회보장재정의 추이와 국제비교」, 『현안요약』,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1998. 3.
- 법무부,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 ,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각년도.

- 의료보험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이태수·김연명·문진수, 『사회보장비용 통계산출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1997. 6.
- 재정경제부, 『1998년도 예산편성기준』, 1997.
- , 『예산개요』, 각년도.
- ,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도.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보건·복지 통계 내부자료』, 1997.
- 한국복지연구회편, 『한국사회복지연감』, 1997.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6.
- , 『세계은행요람』, 1997.
- , 『신국민계정』, 1996.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 각년도.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각목명세서』, 각년도.
-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환경부, 『'98년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997.
- , 『환경예산 개요』, 1996.
- ILO, *Introduction to Social Security*, 3rd edition, 1984.
- ,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Inquiry*, 1997.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3~1997.
-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 錄

1. ILO 第102號 社會保障 最低基準에 관한 協約
2. OECD 基準에 의한 國家別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附錄 1. ILO 第102號 社會保障 最低基準에 관한 協約

제1절 통 칙(General Provisions)

【제1조】 1. 본 협약에서,

- (가) ‘규정’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나) ‘거주’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통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처’라 함은 남편이 부양하는 부인을 말한다.
- (라) ‘미망인’이라 함은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서 부양되던 여성을 말한다.
- (마) ‘자녀’라 함은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 종료연령 또는 15세 미만인 자녀를 말한다.
- (바) ‘자격기간’이라 함은 국내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각출기간, 고용기간 혹은 거주기간 또는 이러한 것들의 배합을 말한다.

2. 제10조, 제30조 및 제49조에서 ‘급여’라 함은 의료의 형식에 의한 직접급여 또는 관계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환에 의한 간접급여를 말한다.

【제2조】 본 협약이 적용되는 각 회원국은,

(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절
- (2)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 제9절 중에서 적

어도 3개의 절(제4절, 제6절, 제9절 및 제10절 중 적어도 하나의 절을 포함)

(3) 제11절, 제12절, 제13절의 관계규정

(4) 제14절

(나) 비준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이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절을 지정한다.

【제3조】 1. 경제 및 의료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회원국은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당해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그 비준에 부수되는 선언으로 제9조 (태)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태)호, 제18조 제2항, 제21조 (태)호, 제27조 (태)호, 제33조 (태)호, 제34조 제3항, 제41조, 제48조 (태)호, 제55조 (태)호 및 제61조 (태)호에서 정한 잠정적인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서 자국이 원용하고 있는 각각의 예외규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당해 예외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나) 당해 예외규정을 일정한 시일 이후에는 원용하지 않을 것

【제4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후에 국제노동사무총장에 대해서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 시 지정하지 않았던 1 또는 2 이상의 절에 대해서 본 협약의 의무를 수락하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한 의무의 수락은 비준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며, 통

지일부터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 중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하게 되는 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고용자 또는 거주자의 특정한 백분율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의 규정의 이행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자들이 당해 특정한 백분율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8절(의료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9절 또는 제10절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방식에 의한 다음과 같은 보호를 고려할 수 있다.

- (가) 공적 기관이 감독하거나, 또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 (나) 숙련남성육체근로자의 근로소득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자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형식의 보호와 배합하여 이 협약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

제2절 의료현물급여(Medical Care)

【제7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현물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사유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질병과 임신, 분만 및 그 결과로 한다.

【제9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및 그 처와 자녀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 및 그 처와 자녀
- (다) 모든 거주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거주자
-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및 그 처와 자녀

【제10조】 1.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일반질병에 대해서는,
 - (1)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
 - (2)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전문의에 의한 병원 내에서의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
 - (3) 의사 기타 자격 있는 자의 처방에 의한 필수적인 약품
 - (4)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 (나)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 (1) 의사 또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간호
 - (2)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2. 일반질병으로 인한 수급자의 의료비용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

附 錄

자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은 관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제10조에 의한 급여는 피보호자의 건강, 노동능력 및 자신의 수요에 족한 능력을 유지하고 회복 또는 개선함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으로 공적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서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건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충족시킨 피보호자나 그 피부양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제12조】 1. 제1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일반질병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26주 동안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급여는 상병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동안은 정지되어서는 안되며,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정의 질병에 대해서는 그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의 급여의 지급기간을 13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절 상병급여(Sickness Benefit)

【제13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사유는 일반질병에 기인하고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노동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중사자
- (다)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제16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용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중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산정된 정기금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게 산정된 정기금으로 하여야 한다.

附 錄

【제17조】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1. 제1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병적 상태에 대해서 26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 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가) 1년간의 상병급여 총 지급일수가 그 1년간 피보호자 수의 10배 이상으로 되는 기간
- (나)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13주간. 이 경우 급여는 근로소득의 정지 후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4절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제19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여사유는 근로능력이 있으며 취로 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보호자가 적당한 직업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정지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나)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제22조】 1.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한 정기금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기간동안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1. 제2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가)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에 대해서 13주간

(나)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26주간

附 錄

2. 급여의 지급기간이 각출기간의 길이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미 받은 급여에 따라서 다르다는 취지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급여의 평균지급기간이 12개월에 대해서 적어도 13주간인 경우는 제1항 (가)호의 규정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급여는 동일한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해서 최초 7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 소정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일시적 취업 전후의 실업일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계절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의 지급기간 및 대기기간을 그 취업조건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노령급여(Old-Age Benefit)

【제25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하여 노령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급여사유는 소정의 연령을 초과하는 생존으로 한다.

2. 소정의 연령은 65세를 넘지 아니하는 노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 국가의 노인의 근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65세보다 높은 연령으로 한다.

3. 수급권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를 정지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각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와 무각출제에 의한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그 이외의 자산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 소정의 액을 넘는 경우에 당해 급여를 감액할 것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27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
- (다)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산액이 제67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제28조】 급여는 다음과 같은 정기금으로 한다.

- (가)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용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
- (나)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

【제29조】 1. 제28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가)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각출이나 고용에 대해서 30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20년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

附 錄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각 출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1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각 출에 대해서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었던 기간에 제1항 (나)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을 당해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각출이나 고용의 경우 10년, 거주에 경우에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10년을 초과하나 30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자격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3항, 제4항의 급여가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 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5절의 적용에 대한 관계규정

의 효력 발생시 노령이었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보호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소정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급여가 통상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에 대하여 확보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제28조 및 제29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고용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제31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고용재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급여사유는 업무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다.

(가) 일반질병

(나) 일반질병에 기인하며 근로소득의 정지를 수반하는 노동불능으로서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것

(다)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소정의 정도를 넘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로서 영구적인 것으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라)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미망인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 다만, 미망인이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附 錄

【제33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의 처와 자녀
- (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에서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급여에 대해서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의 처와 자녀

【제34조】 1. 일반질병에 대한 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료로 한다.

2. 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일반의 및 전문의에 의한 치료(왕진을 포함)
- (나) 치과진료
- (다) 가정 또는 병원 기타 의료시설에서의 간호
- (라) 병원, 요양소 및 기타 의료시설에의 수용
- (마) 치과용 치료재, 약품 기타 내·외과용의 치료재료(보장구 및 그 수리를 포함) 및 안경
- (바) 의료업에 유사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행하는 진료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 의료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일반의에 의한 진료(왕진을 포함한다)
- (나) 입원환자 및 통원환자에 대한 병원 내에서의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병원 외에서 행해질 수 있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

(다) 의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의 처방에 따른 필수적인 약품

(라)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노동능력 및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유지, 회복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35조】 1. 의료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심신장애인을 적당한 업무에 재고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직업재활사업과 적절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에 의해서 제1항의 단체 또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심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 1. 근로능력, 영구적으로 될 우려가 있는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이나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부양자 사망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으로 한다.

2. 영구적으로 될 우려가 있는 소득능력의 일부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능력의 전부 상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관계된 정기금에 대한 적당한 비율의 정기금으로 한다.

3. 다음 사항의 경우 정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불능 또는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일시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권한있는 기관이 인정한 경우

附 錄

【제37조】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피보호자가 재해발생 당시 또는 이환 당시 회원국의 영역 내에 고용되어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그 피보호자에 대하여, 그리고 부양자의 사망에 관한 정기급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해 피보호자의 미망인 및 자녀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노동불능에 관한 급여는 당해 근로소득의 정지 후에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제7절 가족급여(Family Benefit)

【제39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가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급여사유는 소정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로 한다.

【제41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중사자
- (다) 급여사유가 존재하는 동안에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
-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

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제42조】 급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가) 소정의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모든 피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정기금
- (나) 자녀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관해서 지급되는 식료품, 의류, 주거, 휴일 또는 가사보조
- (다) (가)호 및 (나)호의 배합

【제43조】 제42조의 급여는 적어도 각출이나 고용에 대해서 3개월 또는 거주에 대해서 1년의 자격기간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국내법령의 요건을 소정의 기간 내에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다음 중에 어느 하나의 금액에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보통성인남성근로자의 임금의 3퍼센트에 피보호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 (나) (가)호의 임금의 1.5퍼센트에 거주자 자녀의 총수를 곱한 금액

【제45조】 정기금은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8절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제46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출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附 錄

【제47조】 급여사유는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와 국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에 기인하는 근로소득의 정지로 한다.

【제48조】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중의 모든 여성 및 출산의료급여에 대해서 이들 여성 이외에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의 처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 중의 모든 여성 및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의 처
- (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중 모든 여성 및 출산의료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의 처

【제49조】 1.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대한 출산의료급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의료로 한다.

2. 의료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의사 또는 자격있는 조산원에 의한 산전, 분만 및 산후의 간호
- (나) 필요한 경우 병원 입원

3. 제2항의 의료는 피보호자의 건강, 근로능력 및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회복·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출산의료급여를 관리하는 단체 또는 행정부서는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수단에 의해 공적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의해 피보호자가 사용하도록 설치된 일반적인 보호에 관한 시설을 피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 임신, 분만 및 그 결과에 기인하는 근로소득의 정지에 대한 급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으로 한다. 정기금의 액은 그 평균액이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요건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변동시킬 수 있다.

【제51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간을 최소한 충족시키고 있는 제48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여성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제49조의 급여는 제48조에 규정된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남성이 그러한 자격기간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에게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2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금의 지급기간은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직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주로 제한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의해 12주 이상의 휴직기간이 필요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휴직기간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제9절 장애급여(Invalidity Benefit)

【제53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장애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附 錄

【제54조】 급여사유는 규정된 범위의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상태이며, 상병급여 수혜기간이 종료 후에도 장애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제55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
- (다)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자산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근로자
- (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자를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피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

【제56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정기금으로 한다.

- (가)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용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를 보호대상자로 하는 경우 제65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
- (나)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

【제57조】 1. 제56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가)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각출이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

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시키고 있는
피보호자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 각출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해 감액된 급여
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급여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의 자격기
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각
출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이 있었던
동안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을
삭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각출, 고
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최소한 충
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은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삭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附 錄

【제58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 또는 노령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절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제59조】 본 절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국은 본 절의 다음 조항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해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 1. 급여사유는 부양자의 사망의 결과로 미망인 또는 자녀가 입은 부양의 상실로 한다. 다만, 미망인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자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소정의 유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급여의 정지 및 각출제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그 이외의 자산액 또는 이 둘의 합계액이 총액이 소정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급여에 대한 감액을 국내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제61조】 피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한다.

- (가) 모든 피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가 부양하는 처와 자녀
- (나) 모든 거주자의 2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가 부양하는 처와 자녀
- (다) 부양자를 상실하고,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자산액이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에 미달하는 모든 거주자

인 처와 자녀

(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경우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산업부문 사업장의 모든 피고용자의 5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고용자가 부양하는 처와 자녀

【제62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정기금으로 한다.

(가)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피용자 또는 소정의 종류에 속하는 경제활동종사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급여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자산액이 소정의 한도액에 모든 거주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정기금

【제63조】 1. 제62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가) 부양자가 각출이나 고용에 대해서 15년 또는 거주에 대해서 10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각출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노동능력이 있었던 기간동안에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2. 제1항의 급여가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부양자가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 5년의 자격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

附 錄

(나)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종사자의 처와 자녀를 피보호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가 각출에 대해서 3년의 자격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해 부양자가 노동능력이 있었던 제1항 (내호)에서 언급한 소정의 연평균 납부횟수의 2분의 1의 횟수의 각출금을 납부한 피보호자

3.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관계표준수급자의 백분율에서 100분의 10의 비율을 감한 백분율로 하여 제11절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각출, 고용 또는 거주에 대해서 5년의 기간을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충족하고 있는 피보호자에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4. 급여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기간이 각출 또는 고용에 대해서 5년을 초과하나 15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여는 제11절의 부속표에 열거된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감하여 얻은 백분율에 의해 산정된 급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급여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자녀가 없는 미망인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최소한의 기간 존속되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 제62조 및 제63조의 급여는 급여사유가 존속하는 전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절 정기금의 산정기준(Standards to be Complied with by Periodical Payments)

【제65조】 1. 본 조항이 적용되는 정기금에 있어서는 급여액과 급여 사유의 존속기간 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질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근로소득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계산한다.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가 그 근로소득계층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그 자의 종전 근로소득은 당해인이 속하는 계층의 표준근로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급여액 또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고려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한도를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최고한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의 근로소득이 숙련남성육체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4.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부양자의 종전 근로소득, 숙련남성육체근로자의 임금,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5.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본 조항에서 숙련남성육체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설비공 또는 선반공

附 錄

- (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
- (다) 모든 피보호자 중 75퍼센트의 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이 경우 근로소득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모든 피보호자의 근로소득의 평균의 125퍼센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을 갖는 자

7. 제6항 (나)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성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숙련남성육체근로자를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9. 남성숙련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국내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으면 이를 포함)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10. 노령, 업무재해(근로불능의 경우는 제외), 폐질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금은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근로소득수준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6조】 1. 본 조항이 적용되는 정기금에서 급여액과 급여사유의 존속기간동안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은 당해 급여사유에 관해서 본 절의 부속표의 표준수급자에 대해서 최소한 보통성인남성근로자의 임금액과 표준수급자와 동일한 가족적 책임을 갖는 피보호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동 부속표의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된 액수에 달하여야 한다.

2. 보통성인남성근로자의 임금과 급여 및 가족수당은 동일한 시점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3. 표준수급자 이외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표준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조항의 적용에서 보통성인남성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한다.

(a) 전기·기계 이외의 기계제조업의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가)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선정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

5. 제4항 (a)호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미숙련근로자는 당해 급여사유로 보호받고 있는 경제활동종사자인 남자 또는 피보호자의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대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피보호자 또는 부양자의 최대다수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의 중분류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8월 27일 제7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차후 개정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여액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보통성인남성근로자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다.

7. 보통성인남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국내법령

附 錄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의해서 결정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생계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들 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의 임금을 채택하여야 한다.

8. 노령, 업무상 재해(근로불능의 경우를 제외), 장애 및 부양자의 사망에 관계된 정기금은 생계비의 상당한 변동의 결과로 일반근로소득 수준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7조】 본 조항이 적용되는 정기금에 있어서는,

(가) 급여액은 소정의 급여구분 또는 권한있는 공적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하는 급여구분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호의 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당해 급여 이외의 자산액이 소정의 상당한 액 또는 권한있는 공적기관이 소정의 규칙에 따라 정한 상당한 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한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급여와 급여 이외 자산액과의 합계액에서 (다)의 상당한 액을 공제한 금액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건강 및 상응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제66조의 요건에 따라 산정된 대응하는 급여액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본 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총액이 제66조의 규정 및 다음에 열거한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 얻어진 급여총액을 3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호의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1) 제3절에 대해서는 제15조 (나)호의 규정
- (2) 제5절에 대해서는 제27조 (나)호의 규정
- (3) 제9절에 대해서는 제55조 (나)호의 규정
- (4) 제10절에 대해서는 제61조 (나)호의 규정

〈부속표〉 정기금 표준수급자

| 급여제도 | 표준수급자 | 백분율(%) |
|---------|------------------|--------|
| 상병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45 |
| 실업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45 |
| 노령급여 | 연금수급연령의 처를 가진 남성 | 40 |
| 고용재해급여: | | |
| 노동불능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50 |
| 장애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50 |
| 유족 | 두 자녀를 가진 미망인 | 40 |
| 출산급여 | 여성 | 45 |
| 장애급여 | 처와 두 자녀를 가진 남성 | 40 |
| 유족급여 | 두 자녀를 가진 미망인 | 40 |

제12절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균등대우

【제68조】 1. 외국인 거주자는 자국민 거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급여 또는 급여의 부분 및 과도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 및 자국의 영토외에서 생활하는 자국민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피용자를 피보호자로 하는 각출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당해 절의 의무를 수락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인 피보호자는 당해 절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본 절의 적용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규정한 양국간 또는 다수국가 사이의 협정의 존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13절 공통규정(Common Provisions)

【제69조】 제2절 내지 제10절의 어떠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 (가) 관계인이 당해 회원국의 영토 내에 있지 않은 기간
- (나) 관계인이 공적 비용 또는 사회보장단체 혹은 사업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다만, 이 생활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은 수급자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 (다) 관계인이 다른 사회보장급여(가족급여를 제외하며 현금에 한한다)를 받고 있는 기간 및 관계인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기간. 다만, 급여가 정지되는 부분은 당해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제3자에 의한 보상의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라) 관계인이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 (마)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바) 급여사유가 관계인의 의도적인 비행행위에 기인하는 경우
- (사) 적당한 경우에 관계인이 그 이용에 제공된 의료 혹은 재활에 관한 시설의 이용을 태만히 하고, 또는 급여사유의 발생 혹은 계속의 확인 혹은 수급자가 행해야 할 행위에 관한 소정의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그 이용에 제공한 직업안정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노동쟁의에 의한 조업중단의 직접적 결과로 실직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차)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미망인이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기간

【제70조】 1. 모든 청구인은 급여가 거부되거나 급여의 질·양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협약의 적용상 입법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의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의 거부 또는 받은 의료의 질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 적당한 기관에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제1항의 제소할 권리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 설치되고 또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재소할 권리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1조】 1. 본 협약에 의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당해 급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자산이 적은 자가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고 회원국 및 각 종류에 속하는 피보호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보험각출금, 세금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2. 피보호자인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보험각출금의 총액은 피고용자 및 그 처와 자녀의 보호에 충당되는 재원의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본 협약에 의한 회원국의 급여는 가족급여 및 특별부문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그 모두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본 협약에 의하여 급여의 적정한 지급에 대해서 일반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균형에 관해서 필요한 보험계리사의 연구 및 계산을 정기적으로

附 錄

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여의 변경, 보험각출금액의 변경 또는 당해 급여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 해당되는 세금의 변경에 앞서서 적절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72조】 1. 공적 기관의 규제를 받는 단체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대표자가 소정의 조건에 따라서 운영에 참가하거나 고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은 사용자 및 공적 기관의 대표자의 참여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여하는 단체 및 사업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절 부 칙(Miscellaneous Provisions)

【제73조】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당해 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사유
- (나) 당해 질이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관계된 급여로서, 수급권이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유래하는 경우

【제74조】 본 협약은 현존하는 어떠한 협약도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75조】 본 협약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장래 총회가 채택할 협약이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에서 명시하

는 본 협약의 규정은 당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대해서 당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당해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6조】 1.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는 법령에 관한 충분한 정보

(나) 다음에 열거한 규정에서 정하는 통계적 조건의 충족에 대한 증거. 이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이사회가 표시의 통일화에 관하여 행한 제안에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따르도록 한다.

(1) 피보호자의 수에 관해서 제9조 (가)·(나)·(다)·(라)호, 제15조 (가)·(나)·(라)호, 제21조 (가)·(라)호, 제27조 (가)·(나)·(라)호, 제33조 (가)·(나)호, 제41조 (가)·(나)·(라)호, 제48조 (가)·(나)·(다), 제55조 (가)·(나)·(라)호, 제61조 (가)·(나)·(라)호의 규정

(2) 급여액에 관해서, 제4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

(3)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18조 제2항 (가)호의 규정

(4)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해서 제24조 제2항의 규정

(5) 피보호자인 피고용자의 보험각출금이 재원 중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있어서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후 행하는 통지에 있어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자국의 법률 및 관행의 현황을 이사회가 요청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1. 본 협약은 선원 또는 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원 및 어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 의해

附 錄

서 채택된 1946년 선원연금 협약 중에 설정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제2절 내지 제10절에서 그 비준에 의해서 의무를 수락한 절의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로 된 피용자 또는 거주자에 관계된 백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원 및 어민을 피용자, 경제활동참가자 또는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資料: 勞動部〉

附錄 2. OECD 基準에 의한 國家別 GDP 對比 社會
保障費 比率 內譯

〈附表 2-1〉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美國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노령연금급여 | 4.63 | 5.21 | 5.11 | 4.94 | 5.08 | 5.24 | 5.24 | 5.21 |
| 장애연금급여 | 0.78 | 0.73 | 0.72 | 0.70 | 0.74 | 0.79 | 0.86 | 0.90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45 | 0.48 | 0.55 | 0.62 | 0.66 | 0.70 | 0.70 | 0.70 |
| 상병급여 | - | - | - | - | - | - | - | -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0.12 | 0.08 | 0.04 | 0.05 | 0.04 | 0.03 | 0.05 | 0.06 |
| 유족 | 0.96 | 1.00 | 0.96 | 0.90 | 0.93 | 0.96 | 0.96 | 0.96 |
| 가족연금급여 | 0.40 | 0.37 | 0.35 | 0.31 | 0.33 | 0.35 | 0.35 | 0.35 |
| 가족서비스 | 0.31 | 0.25 | 0.24 | 0.23 | 0.24 | 0.27 | 0.28 | 0.29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0.15 | 0.11 | 0.26 | 0.22 | 0.22 | 0.23 | 0.23 | 0.21 |
| 실업급여 | 0.63 | 0.82 | 0.54 | 0.39 | 0.43 | 0.47 | 0.65 | 0.58 |
| 보건 | 3.55 | 4.01 | 4.28 | 4.62 | 5.05 | 5.44 | 5.71 | 5.85 |
| 주택급여 | - | - | - | - | - | - | - | - |
| 기타급여 | 0.45 | 0.41 | 0.34 | 0.38 | 0.41 | 0.49 | 0.52 | 0.55 |
| 합계 | 12.44 | 13.46 | 13.39 | 13.35 | 14.12 | 14.99 | 15.55 | 15.64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 錄

〈附表 2-2〉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日本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
| 노령연금급여 | 3.81 | 4.36 | 4.80 | 4.95 | 4.99 | 4.93 | 5.02 |
| 장애연금급여 | 0.25 | 0.27 | 0.32 | 0.31 | 0.30 | 0.30 | 0.30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26 | 0.29 | 0.27 | 0.24 | 0.23 | 0.21 | 0.21 |
| 상병급여 | 0.09 | 0.09 | 0.07 | 0.06 | 0.06 | 0.06 | 0.06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0.16 | 0.17 | 0.18 | 0.17 | 0.18 | 0.19 | 0.20 |
| 유족 | 0.44 | 0.57 | 0.62 | 0.66 | 0.66 | 0.67 | 0.68 |
| 가족연금급여 | 0.23 | 0.24 | 0.24 | 0.20 | 0.19 | 0.17 | 0.20 |
| 가족서비스 | 0.27 | 0.24 | 0.27 | 0.22 | 0.23 | 0.23 | 0.22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 | - | - | 0.13 | 0.12 | 0.10 | 0.09 |
| 실업급여 | 0.43 | 0.47 | 0.37 | 0.26 | 0.24 | 0.24 | 0.27 |
| 보건 | 4.95 | 5.15 | 5.02 | 5.02 | 5.04 | 5.02 | 5.07 |
| 주택급여 | - | - | - | - | - | - | - |
| 기타급여 | 0.21 | 0.22 | 0.19 | 0.15 | 0.14 | 0.13 | 0.12 |
| 합계 | 11.09 | 12.08 | 12.35 | 12.36 | 12.37 | 12.25 | 12.44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2-3〉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英國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
| 노령연금급여 | 5.07 | 5.72 | 5.60 | 5.02 | 5.23 | 5.60 | 5.84 |
| 장애연금급여 | 0.86 | 1.09 | 1.27 | 1.35 | 1.49 | 1.67 | 1.89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24 | 0.20 | 0.19 | 0.19 | 0.19 | 0.09 | 0.09 |
| 상병급여 | 0.30 | 0.28 | 0.27 | 0.25 | 0.24 | 0.21 | 0.21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0.53 | 0.53 | 0.51 | 0.51 | 0.55 | 0.51 | 0.53 |
| 유족 | 1.75 | 1.65 | 1.51 | 1.19 | 1.26 | 1.32 | 1.30 |
| 가족연금급여 | 1.77 | 1.86 | 1.76 | 1.66 | 1.66 | 1.65 | 1.81 |
| 가족서비스 | 0.52 | 0.50 | 0.44 | 0.39 | 0.41 | 0.44 | 0.48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0.56 | 0.58 | 0.86 | 0.65 | 0.60 | 0.57 | 0.57 |
| 실업급여 | 1.06 | 1.76 | 1.64 | 0.66 | 0.72 | 1.06 | 1.24 |
| 보건 | 4.89 | 5.14 | 4.88 | 4.78 | 4.99 | 5.37 | 5.78 |
| 주택급여 | 0.14 | 0.81 | 1.31 | 1.11 | 1.30 | 1.25 | 1.54 |
| 기타급여 | 0.63 | 0.79 | 1.03 | 1.03 | 1.15 | 1.33 | 1.56 |
| 합계 | 18.32 | 20.91 | 21.36 | 18.79 | 19.78 | 21.05 | 22.84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 錄

〈附表 2-4〉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프랑스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노령연금급여 | 7.79 | 8.43 | 8.78 | 8.53 | 8.73 | 8.99 | 9.31 | 9.73 |
| 장애연금급여 | 1.02 | 1.15 | 1.09 | 1.01 | 0.98 | 0.97 | 0.95 | 0.97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76 | 0.72 | 0.65 | 0.59 | 0.59 | 0.58 | 0.57 | 0.55 |
| 상병급여 | 0.62 | 0.63 | 0.57 | 0.50 | 0.50 | 0.51 | 0.52 | 0.53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0.63 | 0.64 | 0.68 | 0.66 | 0.65 | 0.67 | 0.68 | 0.70 |
| 유족 | 1.97 | 2.10 | 2.04 | 1.93 | 1.94 | 1.93 | 1.95 | 1.96 |
| 가족연금급여 | 2.24 | 2.56 | 2.34 | 2.08 | 2.03 | 1.97 | 1.98 | 2.12 |
| 가족서비스 | 0.29 | 0.38 | 0.35 | 0.36 | 0.35 | 0.35 | 0.37 | 0.41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0.46 | 0.59 | 0.75 | 0.74 | 0.80 | 0.89 | 1.00 | 1.22 |
| 실업급여 | 1.30 | 2.35 | 2.28 | 1.90 | 1.87 | 1.94 | 2.01 | 2.11 |
| 보건 | 5.95 | 6.35 | 6.47 | 6.55 | 6.60 | 6.78 | 6.99 | 7.28 |
| 주택급여 | 0.43 | 0.67 | 0.73 | 0.74 | 0.76 | 0.76 | 0.77 | 0.92 |
| 기타급여 | - | - | - | 0.10 | 0.15 | 0.17 | 0.19 | 0.22 |
| 합계 | 24.46 | 26.57 | 26.74 | 25.67 | 25.95 | 26.52 | 27.29 | 28.73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2-5〉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스웨덴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노령연금급여 | 7.40 | 8.10 | 8.08 | 8.07 | 8.05 | 8.48 | 9.19 | 9.47 |
| 장애연금급여 | 1.96 | 2.11 | 2.07 | 2.12 | 2.12 | 2.20 | 2.40 | 2.57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0.23 | 0.24 | 0.32 | 0.70 | 0.75 | 0.81 | 0.84 | 0.79 |
| 상병급여 | 2.38 | 1.93 | 2.13 | 2.75 | 2.57 | 2.20 | 1.32 | 1.08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1.76 | 1.78 | 1.82 | 1.90 | 2.06 | 2.07 | 3.23 | 3.78 |
| 유족 | 0.63 | 0.70 | 0.69 | 0.70 | 0.70 | 0.74 | 0.80 | 0.83 |
| 가족연금급여 | 1.86 | 1.75 | 1.91 | 2.07 | 2.30 | 2.62 | 2.74 | 2.78 |
| 가족서비스 | 2.31 | 2.51 | 2.50 | 2.31 | 2.47 | 2.60 | 2.57 | 2.61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1.25 | 1.70 | 2.08 | 1.63 | 1.75 | 2.44 | 3.10 | 2.95 |
| 실업급여 | 0.39 | 0.93 | 0.92 | 0.67 | 0.92 | 1.66 | 2.71 | 2.89 |
| 보건 | 8.67 | 8.72 | 7.73 | 7.68 | 7.71 | 7.46 | 6.46 | 6.22 |
| 주택급여 | 1.14 | 0.88 | 0.72 | 0.67 | 0.69 | 0.88 | 0.98 | 1.17 |
| 기타급여 | 0.45 | 0.58 | 0.76 | 0.54 | 0.55 | 0.64 | 0.73 | 0.91 |
| 합계 | 30.42 | 31.94 | 31.74 | 31.80 | 32.62 | 34.79 | 37.07 | 38.03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 錄

〈附表 2-6〉 OECD 基準에 의한 GDP 對比 社會保障費 比率 內譯 네덜란드
(단위: GDP 대비 %)

| 영역 | 1980 | 1983 | 1986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노령연금급여 | 6.77 | 6.97 | 7.02 | 7.10 | 7.54 | 7.45 | 7.49 | 7.53 |
| 장애연금급여 | 4.61 | 4.75 | 4.30 | 4.23 | 4.59 | 4.65 | 4.67 | 4.69 |
|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 | - | - | - | - | - | - | - |
| 상병급여 | 3.23 | 2.62 | 2.37 | 2.41 | 2.79 | 2.48 | 2.61 | 2.65 |
|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 | 0.56 | 0.69 | 0.60 | 0.56 | 0.56 | 0.55 | 0.55 | 0.56 |
| 유족 | 1.17 | 1.15 | 1.00 | 1.00 | 1.19 | 1.19 | 1.21 | 1.20 |
| 가족연금급여 | 2.08 | 1.95 | 1.67 | 1.27 | 1.24 | 1.23 | 1.29 | 1.28 |
| 가족서비스 | 0.54 | 0.51 | 0.41 | 0.50 | 0.54 | 0.56 | 0.57 | 0.60 |
|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 1.09 | 1.15 | 1.10 | 1.05 | 1.04 | 1.10 | 1.15 | 1.24 |
| 실업급여 | 1.71 | 4.01 | 3.21 | 2.64 | 2.49 | 2.49 | 2.57 | 2.55 |
| 보건 | 5.91 | 6.23 | 5.77 | 5.73 | 5.73 | 6.03 | 6.53 | 6.73 |
| 주택급여 | 0.27 | 0.46 | 0.32 | 0.39 | 0.34 | 0.36 | 0.34 | 0.34 |
| 기타급여 | 0.77 | 0.91 | 0.92 | 0.80 | 0.79 | 0.80 | 0.80 | 0.81 |
| 합계 | 28.71 | 31.40 | 28.70 | 27.69 | 28.84 | 28.88 | 29.79 | 30.20 |

註: (-) 해당제도 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